

강원특별자치도

부서경고·통보

제 목 현장지휘직무 수행 부적정

기 관 명 ○○소방서

관 계 부 서 ○○○○○○

관 련 자

내 용

1. 업무 개요

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○○·○○○○○○○)에서는 아래 [표1]과 같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1)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하고 있다.

[표 1] 소방활동 현황('22년 4월~'25년 2.28.기준)

(단위: 개소)

구분	합계	화재	구조	구급	기타
2025	721	26	86	544	65
2024	5,940	100	2,606	2,863	371
2023	5,579	103	2,046	3,083	347
2022	5,579	102	1,871	3,144	462

※ 자료: ○○소방서 종합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

1) 소방기본법 제2조(정의)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, 재난·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·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(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, 의용소방대)

2.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

「현장소방공무원 복무규칙(소방청 훈령)」 제8조(119안전센터의 장)²⁾은 119안전센터 관할 소방업무의 총괄지휘 및 책임자로서 119안전센터장을 두고 있으며, 119안전센터장의 직무 중 하나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, 작전수행 및 현장대원 안전관리를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리고 「같은 규칙」 제15조(현장지휘관의 업무)에는 현장지휘관은 출동 중인 각각의 소방공무원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전파하고, 화재진압, 구조·구급업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급 감독자·소방기관의 장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즉시 그 상황을 보고하며, 현장 근무 종료 후에는 현장에서 인원과 장비 등의 현황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같은 규칙」 제13조(준용규정)에는 119안전센터 이외의 현장부서의 운영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9구조대장도 119안전센터의 장과 함께 재난현장에서의 지휘, 작전수행 및 현장대원 안전관리 업무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리고 소방본부에서는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의 출동에 관한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“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 출동기준 정립”³⁾하여 시행하였으며, 화재 및 인명구조에 관하여서는 현장지휘가 기본원칙으로, 관할 내 일반화재(산불포함)등에 대해서는 지휘차·펌프차에 선택하여 필수출동하도록 하였으며, 다만 단순화재(쓰레기, 음식물탄화)와 급수·배수 및 제설은 지휘관이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출동하도록 출동기준을 정립하여 [표2]와 같이 시행하였다.

2) 제8조(119안전센터의 장)

① 119안전센터에는 관할 소방업무의 총괄지휘 및 책임자로서 119안전센터의 장을 둔다.

② 119안전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3. 재난현장에서의 지휘, 작전수행 및 현장대원 안전관리

3) 소방본부 방호구조과-12637(2022.05.03.)호 『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 출동기준 알림』

4. 관련자 의견 및 판단: 의견 없음

5.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

소방☆ ☆☆☆은 2021. 7. 5.부터 2022. 7. 10.까지, 소방♡ ♡♡♡은 2022. 7. 11.부터 2023. 7. 9.까지, 소방♣ ♣♣♣은 2023. 7. 10.부터 2024. 7. 3.까지, 소방◇ ◇◇◇◇은 2024. 7. 4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19구조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과 함께 출동한 현장대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나 감사대상기간 중 총 ○ ○건에 대하여 출동하지 않았다.

화재 등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에 대해 현장출동과 대원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 출동 건에 대해서 출동하지 않은 것은 「현장소방공무원 복무규칙」과 「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 출동기준」을 위반한 것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부서별 1~2건은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나 ○○번 이상을 출동하지 않은 ○○○○○○에 대하여는 부서 차원에서 출동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어 개인의 문책보다는 「(소방)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“부서경고” 처분사유에 해당한다.

6. 조치할 사항

가. ○○소방서장은

- ① [부서경고] ○○○○○○에 대해 「부서경고」 처분하시기 바라며, 현장 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기관·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·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·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소방본부장(○○○○○○○○)은

- ① [통보] 현장대응단장, 119안전센터장, 119구조대장의 현 실태에 맞는 출동 기준 재정비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